

의안번호	2216401
의 퇴 인	김윤의원
회 답 일	2026.3.24.
추계번호	26C0493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32억 600만원(연평균 6억 4,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환자안전사고의 원인 분석과 예방 등 (안 제14조의2)	387	486	609	765	959	3,206	64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의2제1항~제3항 (환자안전사고의 원인 분석과 예방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보고된 환자안전 사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u>환자 안전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제1항) -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제16조제16조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사고의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수행하며,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사고와 관련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활동의 수립·이행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2항) ○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제2항에 따른 개선활동의 이행 과정에서 <u>보건의료기관에 기술적·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2	안 제14조의2제5항 (환자안전사고의 원인 분석과 예방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활동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권고의 이행 실적에 우수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질 평가 지원금, 의료기관 인증 등에서 환자안전 관련 성과를 반영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4조의2제1항~제3항 (환자안전사고의 원인 분석과 예방 등)	○	○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2	안 제14조의2제5항 (환자안전사고의 원인 분석과 예방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련 성과를 의료질 평가 지원금, 의료기관 인증 등에 반영할 경우 정부의 보건의료기관 지원금 총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향후 사업의 내용, 범위, 방법 등의 변경 시에는 추가재정소요도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는 중앙환자안전센터가 환자안전사고 조사를 위탁 실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위한 비용 전액을 보조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 제14조의2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제14조의2제2항은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조사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으나, 별도의 위탁 또는 비용 지원 규정을 마련하지 않음
 - 다만, 현행법 제8조의2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본 추계서는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환자안전사고 조사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며, 조사 업무 실시에 따라 필요한 인건비 또는 운영비는 추계에 포함하지 않음
 - 현시점에 환자안전사고 조사 수행에 따라 필요한 중앙환자안전센터 추가 인력 규모, 시스템 개선 필요 여부 등을 가정하기 어려움
 - － 현재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 현장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무보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고의 원인 분석, 전문가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 － ‘환자안전 현장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내역사업)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 인프라 조성에 10억 5,000만원,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및 운영비로 2026년 기준 8억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비 2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환자안전사고의 원인 분석과 예방 등(안 제14조의2)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에 해당하며, 조사 대상 기관 수와 조사 단가의 곱으로 추계
- (조사 대상 기관 수) 2025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건수 49건에 전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 연평균 증가율(23%)를 반영하여 추계¹⁾
- (조사 단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준용하여 전문가 자문, 조사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한 조사비용이 2026년 기준 기관당 630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
-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2027~2031년) 총 32억 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개정안에 따른 조사 사업비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조사 대상 기관 수(A)	60	74	91	112	138	—	—
조사 단가(B)	642	655	668	682	695	—	—
추가재정소요(A×B)	387	486	609	765	959	3,206	641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1)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22년 84건, '23년 64건, '24년 47건 등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조사대상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 증가율을 반영하되, 2026년은 2025년과 동일한 49건으로 가정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산출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본 추계서를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